

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”을 “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적극행정 지원위원회”를 “적극행정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적극행정 지원위원회”를 “적극행정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다음 사항은”을 “책임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6조제4항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

제4조제1항 중 “13명”을 “17명 이상 45명 이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금융정책국장, 금융소비자국장,”을 “금융소비자국장, 자본시장정책관, 금융정책국장, 금융산업국장, 금융혁신기획단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사람 중에서 총 8명을 추천하여”를 “사람 중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.

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분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7조제2항 중 “연장자가”를 “사무처장이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

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진의 제2항) 중 “재적위원”을 “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”으로 한다.

②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이 경우 위원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	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 <u>적극행정위원회</u> ----- -----.
제2조(설치)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	제2조(설치) ----- --- <u>적극행정위원회</u> ----- -----.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1. ~ 3. (생략) 4.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다만,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.	제3조(기능)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<u>책임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</u> -----.
가. 단순민원 해소 또는 소극행정·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	<삭 제>
나. 소관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	<삭 제>
다.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	<삭 제>

· 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라. 상정안건과 관련된 수사, 소송, 행정심판,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<신 설>	<삭 제>
5.·6. (생략) 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전체위원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.	4의2.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6조제4항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.·6. (현행과 같음) 제4조(구성) ① ----- ----- 17명 이상 45명 이하----- -----.
② (생략) ③ 정부위원은 기획조정관, 금융정책국장, 금융소비자국장, 행정인사과장으로 한다.	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금융소비자국장, 자본시장정책관, 금융정책국장, 금융산업국장, 금융혁신기획단장 ----- --.
④ 민간위원은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총 8명을 추천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. 다만, 감사분야 전문가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.	④ ----- ----- 사람 중에서 ----- -----. -----.

<신 설>

<신 설>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생 략)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) ① (생 략)

<신 설>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·④ (생 략)

⑤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.

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분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사무처장이
-----.

제9조(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이 경우 위원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.

③ -----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-----
-----.

④·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
소관부서	규제개혁법무담당관
연 락 처	02-2100-2805